

경운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교과 및 비교과 연구, 개발
2. 교양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3. 교양교육 관계자 재교육
4.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및 교류
5. 교양교육 정책과 제도 연구 및 제안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연구소에는 소장, 운영위원, 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교수) ①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교육·연구 업무에 전념하며, 외부연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경운대학교 재직자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소 업무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조교)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4.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 참여기관출연금, 교내지원금, 연구보조금 (연구용역 간접비 포함),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용역)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18조(예산·결산) 연구소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보고)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경운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보 칙

제22조(해산)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